

의안번호	2213779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5. 12. 23.
추 계 번호	25B583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의3 신설(기능성 농산물 표시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2	안 제30조의3 신설(기능성 농산물의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농산물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음(제1항) 1. 기능성 농산물 표시 기준 및 방법의 적합성 등의 조사 2. 기능성 표시 농산물의 품종의 육성·개발이나 생산방법의 개량 등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복사 3. 기능성 표시 농산물의 시료 수거 4. 농산물의 기능성 관여 성분 함량의 시험·검사 5. 기능성 농산물 표시·광고의 실증에 필요한 조사·연구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음(제4항) 1. 기능성 표시 농산물의 품종의 육성·개발이나 생산방법의 개량 등을 위한 자금 지원 2. 기능성 농산물의 홍보 및 판로 지원 3. 기능성 농산물 표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4. 기능성 농산물 표시제 관련 실태조사	재량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조의3 신설(기능성 농산물 표시기준 등)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0조의3 신설(기능성 농산물의 사후관리)	

2. 상세 사유

□ 기능성 농산물 표시기준 마련 및 사후관리 등

- 개정안은 “기능성”과 “기능성 농산물”의 정의¹⁾를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또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농산물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농산물의 표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거나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의 기능성 관여 성분 함량의 시험·검사, 기능성 농산물 표시·광고의 실증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기능성 농산물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능성 표시 농산물의 품종의 육성·개발이나 생산방법의 개량 등을 위한 자금 지원, 기능성 농산물의 홍보 및 판로 지원, 기능성 농산물 표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 시점에서는 기능성 농산물의 표시기준 마련 및 사후관리, 기능성 농산물의 생산·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참고로,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²⁾를 실시하도록 하

1)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기능성”이란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청소년, 임산부 및 질병에 취약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기능성 관여 성분에 의한 건강 유지 및 증진 등 특정의 보건 목적이 기대될 수 있음이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식품의 유용한 특성을 말한다.

16. “기능성 농산물”이란 농산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낮게 함유된 기능성 관여 성분을 품종의 육성·개발이나 생산방법의 개량을 통해 함유하게 하거나 그 함유량을 높인 농산물을 말한다.

2)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2024년 12월 기준 농산물 104건, 임산물 54건, 수산물 26건이 등록되어 있음

면서,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 중인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 관련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 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사업내용	2026
농산물원산지관리 (6032-311)	지리적표시 등록관리	지리적표시품 명칭 보호를 위한 제도 홍보 및 지리적 표시품 사후관리 실시, 지리적표시품 심의회 운영을 통한 등록 적정성 검토	196
		지리적표시 제도 홍보 및 판매지원 등 지리적표시 등 록 제도 활성화 ⁴⁾	2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중 발췌

[표 2]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 활성화 관련 사업 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내용	2026
유통·판매지원	우수한 지리적표시품의 정보제공, 유통채널 확보 등 소비자 인지도· 신뢰도 제고를 통해 실질적인 구매 활동과 연결	250
온·오프라인 홍보	지리적표시품의 효율적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와 지리적표시품 시 장경쟁력 강화	
아동대상 교육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으로 깊이있는 인식 형성	
운영지원 등	신규 등록단체 교육, 컨설팅지원, 대국민 홍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중 발췌

- 3)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조사
 2. 지리적표시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 의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홍보 및 지리적표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지리적표시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4) 2026년부터 국가인증농식품지원 세부사업(3050-300)에서 농산물원산지관리 세부사업(6032-311)으로 이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